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55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무순위(사후) 4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11-85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11.23.)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11.03.(목)	2026.11.11.(수)	2026.11.16.(월)	2026.11.19.(목)	2026.11.21.(토)	2026.11.26.(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무순위)	O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본 단지 홈페이지(http://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com)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 및 발코니 확장시 제공 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따라 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사 및 확장시 제공 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11.23.)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때로부터 3년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본 아파트를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97**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03.(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757**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16.(월)	2026.11.19.(목)	2026.11.21.(토)	2026.11.26.(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5-5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평택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주택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2.11.23.)**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 의거하여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2025.03.21.)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실입주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8로 10(고덕동 2705-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9~20층 20개동 총 1,255세대 중 잔여 3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2월예정(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97	01	084.9452A	84A	2	119	805
					120	502
	02	084.9704B	84B	1	104	502
	합 계			3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 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7.02.26.
084.9452A	2	5, 8층	191,855,000	314,145,000	506,000,000	50,600,000	455,400,000
084.9704B	1	5층	191,855,000	314,145,000	506,000,000	50,600,000	455,40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수협은행	1010-2236-2601	㈜덕원이앤씨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및 제공 품목 현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2027.02.26.	
84A	9,220,000	922,000	8,298,000	-
84B	6,460,000	646,000	5,814,000	-

■ 플러스 옵션 품목 금액 및 제공 현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2027.02.26.	비고
84A	119	805	25,295,000	2,529,500	22,765,500	- 시스템에어컨 2안(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주방가전(인덕션,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 비스포크 냉장고 &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 현관 중문(3연동) - 거실 팬트리 -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 태양열차단필름 - 방진발수방충망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주방벽체(ㄷ자형) - 거실 아트월 - 침실3 붙박이장 - 거실과 침실2 사이 가변형 벽체 미시공 - ㄷ자주방 + 알파룸(방개수 : 3)
	120	502	18,495,000	1,849,500	16,645,500	- 시스템에어컨 2안(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주방가전(식기세척기, 전기오븐) - 현관 중문(3연동) - 거실 팬트리 - 안방 드레스룸 고급형 - 주방확장(ㅡ자 주방) + 대형팬트리 시스템선반[알파룸 미선택(방개수 : 3)] - 방진발수방충망 - 세라믹타일 주방상판, 주방벽체(ㅡ자형) - 침실3 붙박이장 - 거실과 침실2,침실3 가변형 벽체 시공 - 조명(라인조명, 간접등, 주방 우물천장)
84B	104	502	10,310,000	1,031,000	9,279,000	- 시스템에어컨 2안(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현관 중문(3연동) - 거실 팬트리 - 안방 드레스룸 기본형 - 대형팬트리 시스템선반 - 거실 아트월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236-2672	㈜덕원이앤씨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1.03.)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준공 이후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품목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11.03.)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9.(목) ~ 2026.11.28.(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1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서류 제출 일시 : 2026.11.21.(토) 10:00~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하여 함께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변동이력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해외근로자(단신부임)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입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모두 반드시 제출)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인감증명서	-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하여 함께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 관련 지자체 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11.26.(목) 10:00~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하여 함께 제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출입국사실증명서	※성명,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발급하여 함께 제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입주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서, 아파트 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 체결 이후에 플러스 옵션 품목(유상옵션)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유상옵션) 비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지정된 일자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함께 판매 및 진행되며, 제품 관련 사항 등은 기존 공고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덕원이앤씨	㈜대광건영	모아건설산업(주)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7, 10층(수내동, 흥국생명빌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 273, 4층(치평동)
법인등록번호	131111-0360948	200111-0160633	200111-045360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평택고덕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문의 : 1811-8500**